

Understanding of the Improvement of No-Use Packaging Materials
and the Interrupted Order System

사용금지 포장재의 개선 및 중단명령제도의 이해

Writer

김성태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조사관리팀 팀장

Contents

- I. 추진배경
- II.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 III. 사용금지 포장재의 종류
- IV. 사용금지 포장재에 대한 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I. 추진배경

정부에서는 2018년 4월 수도권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폐비닐 수거중단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생산하도록 환경에 유해하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PVC 등), 유색 페트병(음료·생수)의 사용금지를 포함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5.10)”을 발표하였다.

화려한 색상, 분리가 어려운 라벨, 서로 다른 재질로 제조된 페트병과 PVC 재질의 포장재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 위하여 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을 명령하고, 개선명령 미 이행 시 제조·수입·판매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18.12.24, 시행 ’19.12.25)되었다.

II.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 2, 제9조의 4, 제9조의 5, 제39조의 2 제1호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7조의 2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표 1] 개선대상 및 적용 예외 포장재

구분	개선대상(사용금지) 제품 · 포장재 재질 · 구조	개선대상 적용 예외(사용가능 제품 · 포장재)
PVC 및 PV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대상 적용 예외 제품을 제외한 모든 포장재 - 폴리염화비닐 재질을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에 도포 · 코팅 · 수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 압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용유지류 ·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햄류 · 소시지류 · 축 · 수산물 포장용 랩 필름 ·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먹는샘물 및 음료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색 페트병 · 열 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색 페트병 · 열 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 5부터 제3조의 7

4. 「포장재의 재질 · 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44호, '19.12.24)

III. 사용금지 포장재의 종류

「포장재의 재질 · 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44호, '19.12.24)에 따라 PVC · PVDC 재질의 포장재와 먹는

샘물 및 음료류의 페트병 중 유색 몸체, 열 알칼리성의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가 2019년 12월 25일부터 사용금지되었다.

사용금지 제품 · 포장재와 사용이 가능한 제품 · 포장재의 상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사용금지 포장재에 해당되더라도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춰 별도 재활용이 가능한 PVC 재질 포장재 사용 제품과 포장재 재질 · 구조 변경 시 제품의 기능장애 발생, 제품의 제조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거나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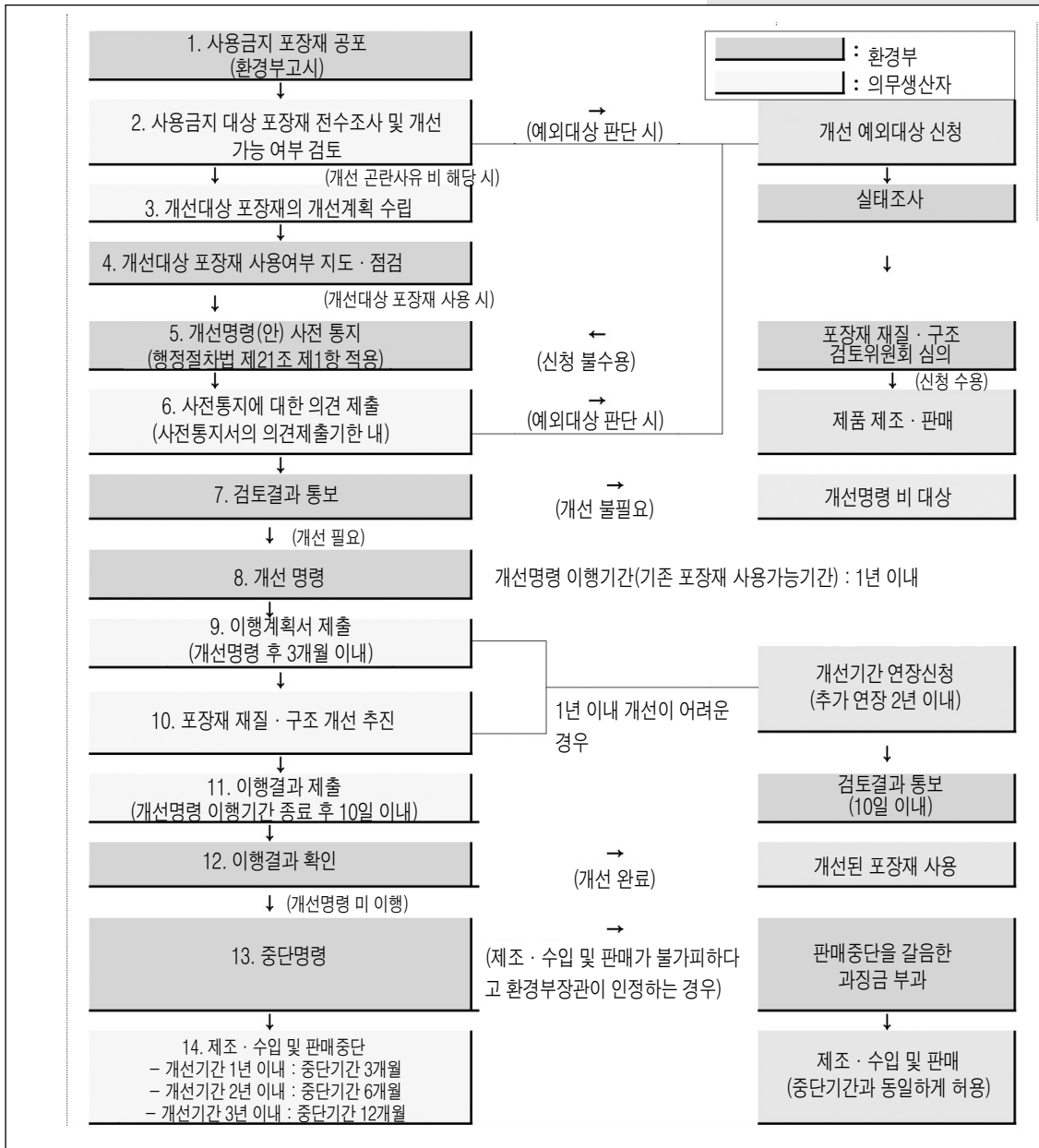
재질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은 포장재 재질 · 구조 검토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로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제품의 포장재 출고량 등 일반 현황과 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질 개선 지원 본부(02-6948-8784 ~ 8786,

[표 2] 중단명령기간 산정기준

구분	중단기간
총 개선기간이 1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 · 제품의 제조 · 수입 ·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3개월
총 개선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 · 제품의 제조 · 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6개월
총 개선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 · 제품의 제조 · 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1년

[그림 1]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 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절차



8791~8793)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IV. 사용금지 포장재에 대한 개선명령 및 제조·

수입·판매 중단명령

사용금지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명령 및 이행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 내용, 개선기간 등이 포함된 개선명령안을 의무생산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개선명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후, 개선명

령서를 의무생산자에게 통지한다.

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재의 개선명령 이행기간 중 제조공정 변경 필요 등으로 인해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 이행기간(1년 이내) 내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생산자는 당초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제


외하고 2년 이내(당초 개선명령 이행기간까지 포함하여 최대 3년)의 개선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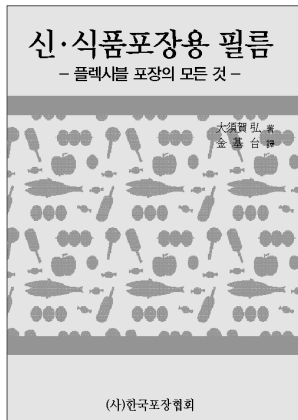
의무생산자가 환경부장관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서를 받고,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을 받게 된다.

제조·수입·판매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할 경우, 의무생산자는 자원재활용법 제39조의 2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 받게 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조·수입·판매 중단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단명령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에 대한 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서적 안내

신·식품포장용 필름

‘신·식품포장용 필름」-플렉시블 포장의 모든 것’은 플렉시블 포장 개략, 플라스틱의 성질, 필름제조법, 필름의 성질, 플렉시블 포장용 필름, 식품보존성, 플렉시블 포장용 각종 필름, 포장과 환경문제, 플렉시블 포장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사)한국포장협회

· 가격 : 20,000원

· 구입 문의

TEL :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